

선거관리규정 개정사항

현행	개정	비고
제 14 조【피선거권】 공고일 현재 6 개월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비 체납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. 단, 본 조합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 14 조【피선거권】 공고일 현재 6 개월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비 <u>체납사실이 없고 본 조합의 징계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.</u>	
제 22 조【개인 유인물】 ① 각급 조직대표자의 후보는 5 종 이내의 개인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. ② 개인 유인물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“검인 필”의 날인을 받은 후 제작배포 하여야 한다. ③ 각급 조직대표자의 후보는 위①항에 의거 발행한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.	제 22 조【개인 유인물】 ① 각급 조직대표자의 후보는 5 종 이내의 개인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. ② 개인 유인물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“검인 필”의 날인을 받은 후 제작배포 하여야 한다. ③ <u>각급 조직대표자의 후보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.</u>	
제 39 조【보궐선거】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- 중 략 - 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. - 하 략 -	제 39 조【보궐선거】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- 중 략 - ③ <u>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- 하 략 -	
제 43 조【선거운동】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- 중 략 - ⑤ 위③항에 의거 발행한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. - 하 략 -	제 43 조【선거운동】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- 중 략 - ⑤ <u>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.</u> - 하 략 -	

부칙 (2014. 4.28)

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